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58

발의연월일: 2022. 7. 1.

발 의 자:백혜련·김승남·서삼석

안규백 • 유정주 • 윤영찬

이정문 • 이형석 • 조정식

홍영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앞서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해당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또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 별도의 통지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등에 있어서도 스

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6항 및 제11조제4항·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취소하거나 변경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 및 제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취소, 연장 또는 변경한 잠정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취소,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
	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u>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u>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⑥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긴급
	응급조치대상자에게 취소하거
	나 변경한 조치의 내용 및 불
	<u>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u>
<u>⑤</u> (생 략)	<u>⑦</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
	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와 피해
	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 및 제9조제4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취소, 연장 또는 변경한 잠정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